

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증개정조례안 수정안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2조(공인의비치사용) ①~② 생략 ③구청장,동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민원실 전용공인을 따로 비치,사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.</p>	<p>제2조(공인의 비치사용) ①~② 생략 ③구청장,직속행정기관장,사업소의 장, 동장은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	<p>제2조(공인의 비치사용) ①~② ③구청장,직속행정기관장,사업소의 장, 동장은----- ----- ----- -----, 이 경우에는 <u>구청장 직인을 민원실 전용으로 직속행정기관장, 사업소의 장, 동장직인은 민원사무전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</u></p>
<p>제4조(공인의 글씨와 규격) ①~② 생략 별표1 공인의 규격 1. 행정기관장의 직인 가.구청장 나.동장,소속행정기관장</p>		<p>제4조(공인의 글씨와 규격) ①~② 생략 별표1 공인의 규격 1. ----- 가.----- 나.직속행정기관장, 동장</p>
<p>제15조(공인의 날인) ①~②생략 ③구청장,동장,소속행정기관장,사업소의 장-----</p>		<p>제15조(공인의 날인) ①~②생략 ③구청장,직속행정기관장,사업소의 장,동장-----</p>